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

3. 주요내용

- 자연녹지지역의 2021.7.13일 이전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완화(안 제48조제8항 신설)
-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안 제52조제3항 신설)

-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시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안 제52조제4항 신설)
- 군계획위원회 현지조사 내용 신설(안 제61조제1항)
-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3조의3)
-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17조, 별표 1의2)
-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3. 07. 31. ~ 2023. 8. 21. (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도시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702, 팩스 : 041)339-775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041)339-77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군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5호 및 제6호 중 “미만인”을 각각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5조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제48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55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소집할”을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2.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물 위 설치시 지붕경계면에서 30cm 이격(옥상난간이 있을시 내벽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하고 평지붕 위 설치시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가 3m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높이의 1/3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건축법」 제86조 및 제119조의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 위 설치시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가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이내) 하여야 한다

별표 7 제5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각각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각각 “건축하는”으로 하

고, 같은 표 제2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별표 20호”를 “별표 1 제20호”로 한다.

별표 12 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6 제12호(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을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2) 중 “당해 용도”를 “해당 용도”로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5호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을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23 제7호(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접수·승인 받은 시설은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p> <p>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제9조제5호 및 제6호</u>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② ~ (생략)</p> <p>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u>미만인</u>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p>	<p>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p> <p>① ----- ----- ----- ----- <u>제9조제1항제6호</u>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이내</u> ----- ----- -----</p> <p>6. ----- -----</p>

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1. (생략)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생략)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이내

7. ~ 8. (현행과 같음)

9. -----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

10. ~ 11. (현행과 같음)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후단 삭제>

17. (현행과 같음)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후단 삭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⑦
(생략)

<신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후단 삭제>

20. ~ 21. (현행과 같음)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후단 삭제>

20. ~ 2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
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
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
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신설>

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
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
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30조제1항2호-----

-----.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현
지조사를 실시할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
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
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1. (생략)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가 .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연결개발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가 .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	----- ----- ----- ----- 1)----- ----- ----- ----- -----
---	---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바) (생략)

(사) (신설)

2) ~ 3) (생략)

3. (생략)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물 위 설치시 지붕경계면에서 30cm 이격(옥상난간이 있을시 내벽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하고 평지붕 위 설치시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이어야 하고 최대높이의 1/3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건축법」 제86조 및 119조의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 위 설치시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이내) 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4. (생략)

5. -----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6. ~ 15. (생략)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건축하는

6. ~ 15. (현행과 같음)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건축하는

나. -----

-----건축하는

5. -----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6. ~ 14. (생략)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

-----건축하
는-----

--

6. ~ 14. (현행과 같음)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

가. -----

-----건축하는

나. -----

-----건
축하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가. -----

-----건축하는-----

나. -----

-----건축하는-----

3. -----

-----건축하는-----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4.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 11. (생략)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의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 17. (생략)

--

4.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 제20호-----

7.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9.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략)

13. ~ 23. (생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생략)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11. (현행과 같음)

12. -----별표 1-----
-----도정공
-----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
-----산물-----

(1) ~ (5) (현행과 같음)

13. ~ 23. (현행과 같음)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현행과 같음)

(2) -----

-----해당 용도에-----

-----「농업·농촌

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
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 14.(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
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
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
장(「농어업·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
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
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
12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6. ~ 27. (생략)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생략)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

및 식품산업기본법」-----

8. ~ 14.(현행과 같음)

15. -----

(1) -----
-----, 도정공장 및 식품공
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

16 ~ 27. (현행과 같음)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현행과 같음)

(2) -----

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 21. (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8. ~ 21. (현행과 같음)